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17. 7. 26.>

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

처리기간
90일

신청인	기 업 명		사 업 자 등 록 번 호	
	대 표 자 성 명			
	소 재 지		전 화 번 호	
설 립 목 적				
설 립 연 월 일				
핵심 뿌리기술의 분야 또는 범위				

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신청인 제출서류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(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)	수수료
	1.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조직, 설비, 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3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만 해당합니다) 2.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(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국세·지방세 납입증명서	없 음

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 접 수	→ 서류심사 및 실제 조사	→ 지정 여부 심사	→ 판 정	→ 지정증 발급
신청인	한국생산기술연구원	중소벤처기업부장관	중소벤처기업부장관	중소벤처기업부장관	

210㎜×297㎜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